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1 선고 2019나13734(본소), 2019나13741(반소) 판결
[신용카드이용대금 ·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름 담당변호사 김주현, 여광수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이승준

변 론 종 결 2021. 3. 4.

판 결 선 고 2021. 4. 1.

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21. 선고 2018가소1825837(본소),

2018가소243210(반소) 판결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로 인한 소송비용 포함)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5,443,356원 및 그 중 12,427,259원에 대하여 2018.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45,530,168원 및 그 중 22,099,104원에 대하여 2017. 3. 1.부터 이 사건 반소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23,431,064원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당심에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추가하면서 반소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24,244,719원 및 이에 대하여 반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1, 13, 17, 18, 21, 22, 25 내지 29, 32, 33, 3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1999. 10. 21. 원고와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카드(카드번호 C, 이하 ‘제1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아 이용하던 중, 2007. 9. 17. 리볼빙 카드로 전환하면서, 신용카드 이용대금 전액을 지급하지 못하여도 리볼빙 약정 등에 따라 약정 한도액에 달할 때까지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일부씩 결제할 수 있고, 나머지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변제기는 이월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볼빙 약정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재발급받아 사용하였다.

나. 피고는 2008. 2. 26. 원고와 사이에 같은 내용의 리볼빙 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신용카드(카드번호 D, 이하 '제2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다.

다. 피고는 당초에는 제1카드 및 제2카드의 결제방식을 '충결제 방식'으로 정하여 해당 월에 발생하는 카드대금을 당월에 모두 결제하기로 하였으나, 2010. 7. 2.경 제1, 2카드의 결제방식을 리볼빙 약정에 따라 신용구매액과 현금서비스 이용금액의 합계액 중 1%를 곱하여 산출한 리볼빙 청구원금과 리볼빙 이자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라. 피고는 자동이체 방식으로 제1, 2카드 이용대금을 납부하였는데, 제1카드에 대하여는 2017. 2. 27. 이용대금 80,000원(원금 27,697원, 리볼빙 이자 52,303원)이 지급된 것을 마지막으로, 제2카드에 대하여는 2016. 12. 26. 이용대금 4,084원(리볼빙 이자 4,084원)이 각 지급된 것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신용카드 이용대금 및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여 모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마. 원고는 2017. 6. 27. 이 사건 채권을 대손상각 이후의 특수채권으로 편입시켰고, 2018. 2. 14. 현재 피고에 대하여 제1카드의 이용으로 원금 2,711,201원, 이자 616,486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제1채권'이라 한다)을, 제2카드의 이용으로 원금 9,716,058원, 이자 2,399,611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제2채권'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채권을 합하여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갖고 있다. 원고가 정한 특수채권에 대한 연체이율은 연 16%이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액에 해당하는 이용대금 원금 및 이자 합계 15,443,356원[= 이용대금 원금 12,427,259원(= 제1카드 2,711,201원 + 제2카드 9,716,058원) + 이자 3,016,097원(= 제1카드 616,486원 + 제2카드 2,399,611원) 및 그 중 이용대금 원금 12,427,259원에 대하여 2018.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특수채권에 대한 연체이율인 연 1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시효소멸 항변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소멸시효 기간은 결제일로부터 5년이라 할 것인데, 제1카드사용분은 마지막 결제일이 2008. 2. 26., 제2카드의 2013. 1.까지 사용분은 마지막 결제일이 2013. 2. 26.이었고,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은 위 각 마지막 결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8. 3. 5. 이뤄졌으므로 이 사건 채권 중 제1카드 사용분 및 제2카드의 2013. 1까지의 사용분(2013. 2. 사용분 165,300원은 제외)은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7. 2. 27. 이 사건 제1카드 이용대금으로 80,000원을, 2016. 12. 26. 이 사건 제2카드 이용대금으로 4,084원을 각 납부한 것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이상, 그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2017. 2. 27. 및 2016. 12. 26.부터 상사 채권인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인데, 위 각 시점부터 상법에서 정한 소멸시효 기간 5년이 지나기 전인 2018. 3. 5.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결국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이 피고가 이 사건 신용카드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달의 결제일이라는 전제 하에 상사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변제기 시점 혹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시점부터 기산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무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리볼빙 약정에 의하여 그 일부금이라도 변제되는 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고, 그 변제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시점에 가서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그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3. 9.경까지 이 사건 채권의 원금 합계액은 81,528,284원이었는데, 피고가 2013. 9.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의 변제 명목으로 합계 94,959,348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로써

피고는 원고에게 13,431,064원(= 94,959,348원 - 81,528,284원)을 더 변제하여 이 사건 채권은 2013. 9.경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를 신용평가기관에 신용불량자로 등록한 결과, 피고는 어쩔 수 없이 신용불량 상태를 해제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2014. 9.경부터 2017. 2.경까지 현금으로 10,000,000원(2014. 9.경 6,000,000원 + 2016. 4.경 4,000,000원)과 자동이체 등으로 12,099,104원, 합계 22,099,104원(= 10,000,000원 + 12,099,104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과다하게 지급한 22,099,104원 상당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원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아울러, 피고가 원고에게 2013. 9.경까지 과지급한 13,431,064원은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적극적 손해로 위 13,431,064원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10,000,000원, 합계 23,431,064원을 피고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 단

먼저, 피고가 원고에게 2014. 9.경 6,000,000원, 2016. 4.경 4,000,000원, 합계 1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을 제25, 27호증의 각 기재 및 E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채권은 2013. 9.경 이미 변제로 모두 소멸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원이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하게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으로 이용대금 원금 및 이자 합계 15,443,356원과 그 중 원금 12,427,259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남아 있는 점, ②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2013. 9.경까지 원고에게 지급한 금원이 피고가 제1, 2카드로 사용한 원금보다 더 많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채권 원금의 일부와 리볼빙 이자를 지급받아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된 수수료율 및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리볼빙 이자, 원금 순으로 각 충당된 점, ③ 피고가 그 이후인 2014. 9.경부터 2017. 2.경까지 원고에게 지급한 12,707,080원

또한 위와 같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리볼빙 이자 내지 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는 2014. 6. 12.경 원고에게 취업을 해야 하는데 필요하니 연체를 풀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 “2천만원 쓰고 5년간 100만원 씩 냈는데 원금 그대로다. 너무하는 것 아니냐”고 부당함을 호소하였음에도 별다른 법적 대응을 강구하지도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2013. 9.경까지 지급한 13,431,064원이 과다하다거나, 피고가 그 이후로지급한 금원이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하게 지급된 금원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채권에 비하여 과다하게 지급된 금원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 및 불법행위 주장은 더 나아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당심에서 확장된 부분 포함)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구광현, 판사 최호식, 판사 이정형